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06

발의연월일: 2024. 7. 5.

발 의 자:윤건영·강훈식·서왕진

박지원 · 김한규 · 이인영

전현희 · 김영배 · 김승원

서영석 · 남인순 · 소병훈

김병기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, 재활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그러나 업무상 재해 인정 및 판정에 필요한 조사가 2019년 513일에서 2023년 8월 기준 1,072일로 2배 이상 길어지면서 적시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 특히 저소득 재해근로자는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 제대로 된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임. 이런 이유로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사회 복귀가 늦어지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. 심지어 산재 조사 중 사망한 재해근로자가 연평균 50명가량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전에도 가계소득 급감으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

입하려는 것임(안 제8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2조의2(보험급여 일부의 선지급)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급감으로 국가가 정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시기,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82조의2(보험급여 일부의 선지
	급) ① 공단은 보험급여의 지
	급이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근
	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
	가계소득 급감으로 국가가 정
	하는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
	게 되거나 생계 유지가 어려운
	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일부를
	선지급하여야 한다.
	② 제1항에 따른 선지급에 관
	한 구체적인 시기, 기준 및 절
	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